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1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등) ····· 2

Ⅰ. 개요

1.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1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23.

(3) 회 부 일 : 2025. 6.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일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 의원안등)

현 행	개정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	○ 대상: (현행과 같음)
○ 내용: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 내용: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 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 주철현·이만희·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 - 2029년 12월 31일: 엄태영·김선교 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 윤준병·서천호·송석준·유상범·박상웅·임호선·정희용의원안) - 2035년 12월 31일: 문대림의원안

*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윤준병의원안 2025. 3.10. 발의(의안번호 8766) 문대림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31), 이만희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8973)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21), 송석준의원안 2025. 4. 1. 발의(의안번호 9522) 엄태영의원안 2025. 6. 23. 발의(의안번호 11013), 이병진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2018)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4), 박상웅의원안 2025. 9. 1. 발의(의안번호 12555)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윤영석의원안 2025. 9. 4. 발의(의안번호 12681),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정희용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09), 김선교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27)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2년 연장하는 안(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주철현·이만희·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엄태영·김선교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서천호·송석준·유상범·박상웅·임호선·정희용의원안), 10년 연장하는 안(문대림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도입되었으며,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연 240만원을 납입한도[1]로 함.

만기 시 저축금액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에 따른 이자 외에 만기 시 ① 일반 농어민에 대하여는 평균잔액의 2.7%(3년납), 7.5%(5년납)의 저축장려금을, ② 저소득농어민에 대하여는 일반 농어민의 저축장려금에 6.3%(3년납), 16.5%(5년납)을 가산하여 지급[2]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

---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3]에 따라 소득세·증여세 및 상속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상품의 특성상 오랜기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는데, 2011년 이후에만 5차례 적용기한이 연장[4]되었음.

2025년 8월 기준 가입자 수는 20만명, 납입액은 1조원 규모이며, 동 비과세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35억원, 2024년 63억원으로 향후 40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액 현황]

(단위: 좌 수,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
가입자 수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208,885
납입액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11,129

자료: 금융위원회

[연도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35	37	43	63	42	4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2011년 이후에만 5차례(2011. 12. 31. → 2014. 12. 31.까지 → 2017. 12. 31.까지 → 2020. 12. 31.까지 → 2022. 12. 31.까지 → 2025. 12. 31.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한편, 저축장려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해당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조성되는데[5]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총 3천억원 규모임.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액]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
정부 출연액	339	341	266	270	315	241
한국은행 출연액	339	341	266	270	315	220

자료: 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농어업 분야는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장 개방, 이상기후 및 환경오염 등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농어민의 수입은 기후, 계절, 시장수요 및 공급 등에 따라 불규칙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민의 안정적인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둘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장려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1976년 도입된 이래 오랜 기간 농어민의 주요 저축수단이 되어왔고, 농어가 가구당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할 때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차원에서도 세제지원의 유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농어가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으로 조사[6]된 바 있고, 2024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60만원으로,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6,365만원인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8,038만원으로 조사[7]되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동 과세특례는 정부 예산 출연을 통한 저축장려금의 지급에 더하여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저소득 농어민이 아닌 일반 농어민에게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형평과 장기적 재정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6)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7) 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